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97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05년도 이후 최근 7년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이후 유가,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감소되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며,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(안 제10조제1항 [별표 3])

- 기본 부과금액(0.75m^3) “18,810원”을 “20,350원”으로
- 초과 부과금액(0.1m^3 당) “1,430원”을 “1,540원”으로 한다.

나. 과태료의 부과징수(안 제19조)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관련 조항 정비

다.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운 영상 미비점 보완 등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법률용어 순화 등
-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적용 시기를 2013.03.01일부터 시행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

나. 합의 :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- 원안의결
[지역경제과-38583(2012.10.10)호]와 관련임.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6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2.10.18. ~ 2012.11. 7.) 결과 : “의견 없음”
- 2)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: “원안 동의”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“원안 동의”
- 4) 제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결과 : “원안의결”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6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관할구역안”을 “관할 구역 안”으로, “수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”을 “수립하고, 효율적 유지관리·처리방법의 개선 등을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)”를 “(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”으로, “1회이상 실시되도록”을 “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할구역”을 “관할 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전단 중 “기한내에”를 “기한까지”로, “발송 하여야”를 “발송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동 기한”을 “같은 기한”으로, “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80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할구역”을 “관할 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할구역”을

“관할 구역”으로, “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”을 “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분뇨의 수집운반)”을 “(분뇨의 수집·운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”을 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”으로, “수집운반하고자”를 “수집·운반하고자”로, “7일 내지 15일”을 “7일부터 15일까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시민의 요청이 있는”을 “구민의 요청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”을 “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”을 “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”으로,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)”을 “(분뇨수집·운반 등의 대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”을 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·운반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대행계약서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1조제4항에 따라”로, “별표3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3의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”를 “제10조에

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”으로, “납부기한 내에”를 “납부기한까지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분뇨 수집·운반업자”를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”로, “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익월”을 “다음 달”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- 제19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**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
-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(체납부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그 처

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0조 중 “조례시행에 관하여”을 “조례 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며,
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0조제1항[별표 3]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分	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 고
분 뇨	기 본	400 ℥	10,000	
	초 과	10 ℥ 당	150	
개인하수처리시설	기 본	0.75m ³	20,350	
	초 과	0.1m ³ 당	1,540	
	지하 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
	야간 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

비고 : 1.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
 2. 야간청소시간은 22:00부터 익일 04:00까지로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수 신 :

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인)

[별지 제6호서식]
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신청인	① 성명	(한자)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			
과태료 처분내역	④ 부과기관		⑤ 남부통지서 번호	
	⑥ 고지받은 일자		⑦ 과태료 금액	
	⑧ 과태료처분 사유			
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
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
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

제 호

수 신 :

발 신 : 마포구청장(인)

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

1. 「하수도법」 제 조와 관련합니다.
2. 「하수도법」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, 본인
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
따라 통보합니다.

과 태 료 처 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④ 고지일자		⑤ 과 태 료 금 액	
	⑥ 부과기관		⑦ 이 의 제 기 일 자	

첨 부 : 1.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.

2.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. 끝

[별지 제9호서식] (신설)

과태료 납부독촉장

납 부 의무자	성 명		
	주 소		
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			
위반사항			
과태료 금액		당초납부기일	

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분뇨의 적정처</u>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<u>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조(<u>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</u>) ① 구청장은 <u>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</u> 의하여 <u>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, 정화조</u>(이하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이라 한다)의 내부청소가 연 <u>1회이상 실시되도록</u>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<u>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(SCUM) 및 침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-----.</p> <p>제2조(<u>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</u>) -----</p> <p>----- 관할 구역 안-----</p> <p>- <u>수립하고, 효율적 유지관리 ·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-----.</u></p> <p>제3조(<u>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</u>) ① ----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3조제1항에 따라 <u>관할 구역 -----</u></p> <p>----- <u>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-----.</u></p> <p>② ----- <u>관할 구역 -----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,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 석,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 지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서 정한 <u>기한내에</u>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<u>발송 하여야</u> 한다.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(청소 촉구서의 도착일 로부터 1개월 이내) 및 <u>동 기한까지</u>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<u>법 제80 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</u> 과태료가 부 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. ③ 구청장은 <u>관할구역</u>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·운반업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<u>관할구역</u>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<u>시민의 청소요청이</u> <u>있는</u>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.	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 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기한까지</u> ----- ----- ----- <u>발송하여야</u> ----- ----- ----- <u>같은 기한</u> ----- ----- <u>법 제80조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<u>관할 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----- <u>관할 구역</u> ----- ----- <u>구민의 청소요청을</u> <u>받은</u> ----- ----- ----- 제6조(<u>분뇨의 수집운반</u>) 구청장은 <u>법</u> <u>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</u> <u>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</u>

현 행	개 정 안
<p>경우에는 동별·지역별 <u>7일</u> 내지 <u>15일</u>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7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)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<u>별표1</u>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· 3. (생 략)</p> <p><u>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<u>별지 제2호 서식</u>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 <u>7일부터 15일까지</u></p> <p>의 ----- . ----- <u>구민의 요청을 받은 ----- .</u></p> <p><u>제7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) -----</u></p> <p><u>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 -----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-----</u></p> <p><u>----- <u>별표 1-----</u>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② -----</u></p> <p><u>----- <u>별지 제1호서식-----</u>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1. · 3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③ -----</u></p> <p><u>----- <u>별지 제2호서식-----</u></u></p> <p><u>-----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)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분뇨수집·운반 등의 대행) ① -----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·운반 ----- 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대행계약서에 ----- 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----- .</p>
<p>제10조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)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</p>	<p>제10조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) ① -----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----- .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별 표 3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별표 3의 기준에 따 라 ----- 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수수료의 가산금) <u>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수수료의 가산금) <u>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-----</u> ----- -----. -----.</p>
<p>제13조(수수료의 강제징수) <u>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(수수료의 강제징수) <u>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-----</u> ----- -----. -----.</p>
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----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. 3. 그 밖에 ----- -----
<p>제1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 ①</p>	<p>제1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 ①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분뇨 수집 · 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<u>지체없이</u>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분뇨수집 · 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<u>의월</u>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 ① 법 제80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」의 징수결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(고지서)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(체납)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</u></p>	<p><u>분뇨수집 · 운반업자</u>----- ----- ----- 「<u>하수도법 시행령</u>」 제24 조제3항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다음 달</u> ----- -----</p> <p><u>제19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 ① 법 제80 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를 취소한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</p>
<p>④ 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(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)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p>	<p>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(체납부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⑤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</p>	<p>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이외의 사항은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	제20조(시행규칙) -- 조례 시행에 ----- [별표 3]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과기준</th> <th>부과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분뇨</td> <td>기본</td> <td>400ℓ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초과</td> <td>10ℓ당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개인하수 처리시설</td> <td>기본</td> <td>0.75m³</td> <td><u>18,810</u></td> </tr> <tr> <td>초과</td> <td>0.1m³당</td> <td><u>1,430</u></td> </tr> <tr> <td>지하활증</td> <td>정화조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tr> <td>야간활증</td> <td>정화조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(생 략)</p>	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뇨	기본	400ℓ	10,000	초과	10ℓ당	150	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	0.75m ³	<u>18,810</u>	초과	0.1m ³ 당	<u>1,430</u>	지하활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야간활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과기준</th> <th>부과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분뇨</td> <td>기본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초과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개인하수 처리시설</td> <td>기본</td> <td>0.75m³</td> <td><u>20,350</u></td> </tr> <tr> <td>초과</td> <td>0.1m³당</td> <td><u>1,540</u></td> </tr> <tr> <td>지하활증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야간활증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(현행과 같음)</p>	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뇨	기본	(현행과 같음)		초과	(현행과 같음)		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	0.75m ³	<u>20,350</u>	초과	0.1m ³ 당	<u>1,540</u>	지하활증	(현행과 같음)		야간활증	(현행과 같음)	
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뇨	기본	400ℓ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	10ℓ당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	0.75m ³	<u>18,81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	0.1m ³ 당	<u>1,43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하활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활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뇨	기본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	0.75m ³	<u>20,3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	0.1m ³ 당	<u>1,54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하활증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활증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